

제34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월20일(금)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현안보고(근로시간 단축 등)

상정된 안건

- 2. 현안보고(근로시간 단축 등)5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첫 번째 회의를 하루 전에 긴급하게 소집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갖게 된 것은 최근 정부에서, 특히 장관께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언급을 언론에 하셨는데 기존의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르고 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96년도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긴 초장근로시간이라는 불명예를 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가 평균 1750시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2200시간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

부가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5일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18대 국회, 19대 국회, 수도 없이 국회에서는 ‘정부가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5일이 아니라 7일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노동계나 또 노동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국제적으로 또 ILO 같은 데서도 무수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회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초기에도, 심지어는 노사정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지금 68시간, 심지어 70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당시에 노동부가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기권 장관께서 언론에다가 ‘국회가 노동법 개정을 해 주지 않아서 이 근로시간 문제가,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진의를 빨리 알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오늘 회의 소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입법사항이 아닙니다.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

문에 이렇게 장시간 노동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국가적 과제에도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이기권 장관님께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그 배경을 충분히 위원들께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입장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더구나 국회에다가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까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갑자기 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도 있고 또 각 당의 의총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마는 위원님들이 오늘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영표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새누리당 간사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작년 7월 14일 환노위 결산회의에서 단독 표결처리 했을 때도 그렇고 지난 12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까지 포함된 법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을 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노위는 서로 신뢰를 갖고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의는 그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섭단체가 셋에서 넷으로 늘어났습니다. 간사 간 협의가 이전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회의 일정과 안건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게 또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간 협의

와는 무관하게 이렇듯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앞으로도 간사 간 협의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환노위가 어떻게 운영될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야당 간사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협치가 되는 환노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금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위원들은 참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서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과문한지 몰라도 원래 국회 운영, 특히 상임위 운영은 연중계획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임시국회에서도, 사실 오늘 처음 열리는 상임위입니다. 물론 간사 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간사 제도 때문에 상임위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협의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간사 제도 자체를 고치더라도 상임위 자체가 제때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자체가 논의되고 협의될 수 있는 구조로 빨리 전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단 여당 위원들이 참석 안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의사진행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1월 달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당연히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상임위가 계속 개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사님들께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회의 전에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간사들은 그런 위원들의 요구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간사 간의 조정과 협의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상임위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오히려 간사단 안에서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권력 이용을 통한 특혜시비 문제로 온 나라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백 없고 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촛불을 통해서 특혜비리 관련자들이 줄줄이 지금 검찰에 소환되고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는 근절해야 된다, 뿌리째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개혁 요구가 지금 국민들 목소리를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공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누구보다 최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처인데요, 보도된 사실만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서 14년까지 장관 본인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한국기술교육대학원에 장관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인데요. 물론 장관님 본인께서는 그 후에 이 보도 사실에 대해서 사위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것은 상견례 이전에, 그분을 알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채용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비리 의혹에 관련돼 있는 어떤 분이 '나는 사전에 그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한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특검에 그리고 여러 수사기관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분들도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알고 했다고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속이 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1차 서류전형에 185명 중 28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6.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2차 면접 때는 14명이 그중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13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의 장관님 사위의 응시원서를

보았더니 소위 그 당시의 사회통념상 직업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력사항에는 군경력 하나가 들어가 있고 기타 활동에는 학교 재학 내용만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나중에 질의로 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아니,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류전형을 뚫고 합격을 했다고 상식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부인만으로는 해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기술교육대학 측에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신입 채용 심사위원 명단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분이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의 심사자료, 그리고 정규직 전환 면접관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바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호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채용 비리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의 자료가 저희들에게 제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 차원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출을 요청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장관 본인께서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장관님 본인이 이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저는 실제 고용노동부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잠깐만요.

하여튼 이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가 됩니까? 한기대에서 나오셨나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김기영** 예.

○**위원장 홍영표** 일어서 보십시오.

자료 제출하실 것입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김기영**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인정보……

○위원장 홍영표 마이크 가지고 하십시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김기영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개인정보 보호법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김기영 저희들이 미리 좀 알아봤더니 거기 명단이라든지 개인의 점수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제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것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임이자 새누리당 신임 간사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나가 버리셨는데요, 다른 우리 위원들의 말씀도 듣고 나가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 임시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까지 탄핵도 하고 예산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힘든 연말을 보냈기 때문에 보통 1월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1월 임시국회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1월 임시국회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임시국회가 특히 노동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있고 꼭 통과가 안 되더라도 머리를 맞대서 간극들을 좁히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1월 임시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정당에서 불참을 해 가지고 1월 임시국회를 맹탕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나가시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당히 모순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 연말 우리 환노위를 상기시켜 보면 그 당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갈라서기 전에 새누리당의 하태경 간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세월호법과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야 간에도 이것은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반대를 해서 못 했던 것이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니까?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가습기국조특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이유는 여야 간에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청와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국회를 공전시켰고 이 중요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반대했고 가습기국조특위의 기간 연장을 무산시켰다는 게 새누리당이 어쨌든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이 마치 신속처리안건을 해 버렸기 때문에 새누리당 위원들은 환노위의 이런 갑작스러운 전체 회의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반성에 대한,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오히려 1월 국회를 성의 있게 이끌어가고 하고 장관의 그런 뭔가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상임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를 놓는 것이 아니냐,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새누리당은 자기반성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반성이 전제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와 명령이 없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가습기국조특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신속 지정된 안건은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1월 임시국회 이렇게 맹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도 전화드렸고 각 당의 간사님들께도 전화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이렇게 헛되게 보내서 되겠느냐…… 제가 임이자 간사님께도 분명히 전화를 드려 가지고 해야 된다, 무엇이든 해서 이 노동 현실과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상기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처사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여러 전문성과 경륜이 많은 수석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만 바른정당의 간사로 추천되신 하태경 위원께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워서 간사 선임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안보고(근로시간 단축 등)

(10시26분)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부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은 불투명하고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학력 졸업생이 증가해 온 추세까지 감안하면 1/4분기 일자리 상황은 크게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조 규모의 정부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청년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들은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상황은 면밀히 살펴가며 기업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실직한 경우에는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보완해 가겠습니다.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범정부적 협업을 통하여 입찰제도 개선, 납품단가 보장, 관련 세제지원 등 원하청 상생을 위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근로감독은 다단계 하도급 중심 업종에 집중하여 원청의 성과를 하청 근로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하면서 본사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강화, 일하는 문화 개선, 입법적 보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시스템 고도화, 새로운 고용환경에 적합한 고용안전망 개편,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내용과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는 노동시장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야 하는 현재와 미래의 숙제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자리와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감안하여 우선 고용상황 관련 대책과 장시간 근로 개선에 관한 현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부의 전체적인 올해 계획은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 현안보고는 오늘 사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도 좀 촉박하고 내용은 아

마 위원님들이 이미 많이 파악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현안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오늘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랜드 관련해서 지난번 특별근로감독이 있었고 총 4만 4360명 노동자들의 연장수당, 휴업수당 등 83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감독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액수의 근거, 무엇을 근거로 이 액수를 추산을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구체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이랜드파크 감독은, 총 360개 직영매장입니다. 직영매장에 대해서 근로하고 있는 부분을 했고 기획감독의 형태로 해서 1년간 총 미지불 임금금액을 83억으로 산정했습니다. 4만 4000명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랜드에서 받은 자료로 산정을 하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전혀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셨……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실제로 360개 매장에 근로감독관들이 총 700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체 1000명 중에 700명이 360개 각 매장에 확인을 나가고 점검표를 토대로 해서 관련되는 서류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다 이랜드 기업 측으로부터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실제로 감독을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 부분의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체불된 임금을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

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체불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개개인의 노동자들이 내가 얼마나 어떻게 체불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할 때 기업 측에서 그것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과 기록된 시간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출퇴근시간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도 이랜드 본사가 이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출퇴근기록을 봐야지 내가 얼마큼 돈을 떼인 것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가 퇴직자의 사용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39조 위반 맞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관련되는 서류 부분은 저희들이 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정미 위원 이랜드기업 측으로부터, 개개인 노동자들의 자신의 임금을 정산하기 위한 서류 제출 요구에 반드시 답해야 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출퇴근기록 의무 자체는 현재 현행 법령에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랜드 본사에 대해서 입건을 해서 사법처리 중에 있고 근로감독관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회사 측이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에 대한 관련되는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고요.

현재 이랜드 측에서는 현행 근로감독 부분에 있어서, 감독부서의 사법처리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금 협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밝힌 바대로 이게 비정규직 청년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정규직 사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임금착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보도기사 보셨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봤습니다.

○이정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회사에는 근로계약서가 저기 나오다시피 연장근로 20시간 포괄임금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보를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월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들을 시켰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본사에 사원관리프로그램인 F1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그리고 16일에는 16.5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이틀간에만 18시간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수당을 한 달에 20시간만 계산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틀 동안 18시간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다음 사람의 케이스를 보시면 2013년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한 출퇴근 시간표가 다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는 15.5시간을 일을 했고 그리고 1월 15일에는 16시간을 근무했다라는 것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빨간박스로 되어 있는 수정된 근무시간은 16시간을 넘게 일했던 사람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표시를 해서 그 8시간만큼의 임금을 줬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예 20시간 연장수당조차도 안 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이랜드의 임금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F1 시스템 자료를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목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미 고발장을 저희 당에서 검찰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고용노동부에서도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1월 9일 날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1월 12일에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서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F1 시스템에 대해서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지금 접수되어서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검찰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증거인멸의 시간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블랙기업 문제가 이 사회

의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업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정미 위원**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게 우리 사회 통념의 일주일과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일주일 문제는 조금 논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로기준법상의 일주일은 주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상……

○**이정미 위원** 그것은 장관님 통념의 문제이지요, 주5일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없는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7일 근무하고 하루 유급휴가 주면 8일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원 판결을 보면 일하는 날을 일주일로 보고 소정의 일을 다했으면 하루의 유급……

○**이정미 위원** 최근 고법 판결을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들이 좀 헷갈…… 최근 고법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판결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근로시간을 일주일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주5일에 한정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하고 일본은 주중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해 온 시스템이라서 그게 지금 최근에 근로시간과 가산 논쟁이 되고 있는 것도 휴일 유급 1일 휴가라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바대로 저희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쳐서 총 연장근로를 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나 전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에 나와 있는 그 해석 그대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만 이 해석을 무슨 별나라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월·화·수·목·금 5일 그리고 토·일 이틀 이렇게 7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그 사이에 12시간 연장근로 하고 휴일근로로 시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합쳐진다고 하는 계산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고용노동부만 이것에 대한 행정해석을 계속 그렇게 해 오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근원지예요.

그런데 그 근원지에서 계속 이 분란을 일으켜 오면서 국회에다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네 안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앞과 뒤가 바뀌고 위·아래가 거꾸로 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53년도에 만들어서 그때 48시간 그다음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유급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는 사실 일요일도 많이 출근을 했었습니다.

일본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게 우리는 휴일을 유급으로 줘라는 문제가 다른 나라에 없는 조항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53년 이후로 일관되게 해 왔고요.

중간에 91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휴일하고 연장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을 안 하고 휴일 날 8시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을 해 줘야 한다 해서 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휴일 날 연장에 대해서는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개최하시면서 근로시간 관련해서 언론에 기사난 것 그다음에 국회와 정부 간의 어떤 쟁점 문제 제기뿐만 아니고 지적을 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이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우리가 노동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동 5법을 일괄처리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까지는 가급적 그

러자고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그래서 각각의 항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괄처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게 전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과 다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면서 이전에 노동 5법 한꺼번에 처리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셨던 그 입장에 대한 어떤 해명과 반성도 없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지적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기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입법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이런 부분이 묻혀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사 난 것은 그제 국민께 금년도 고용노동정책 업무보고를 드리고 특히 금년 1/4분기의 100인 이상 청년들이 갈 만한 기업의 채용계획이 작년 1/4분기에 비해서 8.8%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장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청년 취업이 늘어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강조하고자 경총 초청 조찬간담회에 가서 그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노동계한테도 노동개혁을 하면 청년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영똥히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다 말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물밑에서 당사자들 접촉도 하고 공감대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각 위원님들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또 일가 양립

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각각의 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리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 정부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국회가 노력을 안 하는 모양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은 가장 큰 책임은 저의 능력 부족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의 정성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넓혀 갈 계획이다’ 이 말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서형수 위원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장관님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챙기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제가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년의 국정 과제로서 가장 큰 것이 일자리 문제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자리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지금 가장 논점이 많은 입법 문제를 앞세우는 것 자체가 과연 금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 자체는 노사 간이든지 이해당사자의 어떤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협조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 자체를 먼저 들고 나오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데도 어렵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커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고 이렇게 행보를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저는 금년도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걸 해결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형수 위원 글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차피 지금, 앞으로 내세우지 말고 그 부분은 전적

으로 맡겨 두시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도……

○서형수 위원 앞으로 입법 문제 자체는 우리 국회 여기서 판단하실 테니까 너무 앞세워 내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하여튼 저희들도 자주 설명 올리고요. 저희가 해야 될, 실질적으로 1000억을 통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지 또 실제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장관님이 장황하게 지금 현재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 특히 1주간의 근로시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관님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결국은 주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주간 근로시간 자체가 다른 외국에서 하는 판단기준과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일 자체를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 하는 건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를, 마치 휴일 자체를 포함시키지 않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 그건 저는 상당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났습니다마는 하급심의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된 판결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형수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 나중에 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서형수 위원 일단 행정해석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자료 4쪽에 보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여부에 대한 법상 불명확성으로 인해 노사 간 갈등 계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률 자체가 불명확한 것이 아니고 법률 자체는 명확한데 노동관행 자체가 법률하고 어긋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걸 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이라는 측면으로서 방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이라든지 불명확성이 있는

것이 법률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조금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뀐 게 2003년도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제가 그때 속기록을 다 훑어 봐도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전혀 없었고요. 예를 들면 그때는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려는 계기가 됐던 게 주 6일에서 주 5일로 전환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지요, 주휴일 자체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주휴 유급으로 주는 문제는 53……

○**서형수 위원** 유급 말고 그때 됐던 게 주로 우리 관행이 주휴일을 하루만 하던 것을 주휴일을 이틀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요, 2003년이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두 번의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데요.

○**서형수 위원** 48, 44……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는 저희들이 그 당사자가 해야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낮추는 데만 논쟁을 해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44시간 근로시간 할 때는 주로 주휴일이 하루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급으로 해서……

○**서형수 위원** 지금은 40시간 하면서 주휴일이 이틀 된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통상은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해석대로 하면 44시간 할 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해석한 대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그러면 44시간에다가 12시간 하면 56시간에다가 주휴일이 하루 있다면 8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64시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정 40시간을 며칠 만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관행 자체가 보면 주휴일이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는 8시간 하면 44 플러스 12 플러스 8이면 64시간 하던 걸 지금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당기고 주휴일

이 이틀이 되니까 결국은 40 플러스 12 플러스 8이 아니고 16이 되니까 거꾸로 68시간으로 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 허용시간 자체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가 주 40시간으로 한다고 한 거거든요. 이 주 40시간을 5일 만에 하느냐, 4일 만에 하느냐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그건 노사 협의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노동현장에서 그 당시에는 주 5일제로 가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보수랑 해 보면 결국은…… 그 당시에는 노동시간 64시간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거꾸로 68시간으로 4시간 늘려 준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5일을 전제로 하면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의 행정해석 자체 논리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저희가 48시간 그다음에 주휴 이런 개념에서 총근로시간을 정해 왔는데 중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8에서 44, 44에서 40으로 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간다는 쪽만 논의를 해서 정해 왔지 전체 근로시간을 다루지 못했던 부분의 한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까지 정비가 됐으면 지금 갈등이 좀 줄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수 위원** 그렇다고 치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50조1항을 보든 53조를 보든 결국 1주간의 근로시간 자체가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재 행정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어야지요, 휴일근로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 휴일근로는, 다른 주 근로시간은 12시간 자체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면서 그러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밖에 못 한다는 그것도 아무런 근거가……

만약에 백보를 양보해서 휴일근로를 따로 한다고 그러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지금 근로기준법에 조항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휴일 자체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를 하고 휴일이라도 연장근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은 입법정신, 입법취지가 당연히 주 근무시간, 주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일단 휴일도 포함되는 걸로 해서 법률 자체는 한

톨도 저는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러 가지 법원 판결도 갈리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휴일 가산금제도가 돼 있고 또 시행령에서 휴일 유급휴가제도를 두고 있어서 휴일과 주중의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53년 이후부터 일관되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또 저희가 과도성장기에 근로자들도 1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그런 의지와 기업도 가동률을 높이려는 것들이 같이 맞닥뜨려서 이렇게 해 와서 어느 한순간에……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근로시간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나라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아주 고의적이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린다랄지 벌금을 물린다랄지 이런 상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자율권을 비교적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근로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임의적으로 해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법안을 그렇게 합의했던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같은 말씀을 계속하니 까…… 결국은 제가 보면 지금 입법취지나 입법규정 자체가 불명확한 건 없다, 다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노동현장에서 사업주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관행이 지금 몇십 년 쌓여 있기 때문에 저도 대법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법률규정 자체가 애매해서가 아니고 당연한 법률규정 자체가 현실에서 지금 현재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는 이걸 주관하는 입법부처에서 왜곡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법률규정 자체가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입법 제안을 하실 때는 법률 자체를 타할 것이 아니고 지금 노동현장 자체가 왜 이렇게 이 법을 못 따라가는지, 노동부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성과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내세우면서 해야지 이것은 무조건 법률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는 사실 저는 해결이 힘들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해석을, 저희 행정해석을 바꿔서 일주일의 총근로를 연장·휴일을 다 포함해서 52시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근로시간이, 약 40만 원 임금이 줄과 동시에 중소기업은 가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더구나 위반하면, 통상임금 지난번 판결났을 때는 급여를 더 주면 위법의 문제는 없어지는데 이걸 가동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 처벌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노사정이 1년간 대타협을 할 때 실현가능성을 놓고 단계별로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수 위원** 다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연 노동현실 자체가, 지금 고용현실이 법을 못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완화하자라고 말씀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53년도부터 그 해석을 일관되게 해 와서, 그다음에 그 해석해오는 과정에는 노사의 이해도 같았고 또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든 게 일본법하고 비슷한데 일본도 휴일과 연장을 완전히 구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을 근무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을 휴일까지 넣어서 하는 해석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입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죄송합니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다들 이석을 하시기 전에 꼭 긴급하게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랜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체불임금이 1조 4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불임금이 계속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이랜드 같은 이런 불법 악덕기업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상임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청문회도 한번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인 국감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조건에서 일단 이랜드를 포함한 블랙기업, 이런 악질적인 체불임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추려서 저희가 체불임금청문회 같은 것을 한번 열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우리 환노위에서 의결을 해서 이 청문회를 개최할 것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이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명백한 공적 권력을 이용한 특혜 의혹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학교 쪽에 요구했던 세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함께 의결을 해 주시고 상임위 차원에서,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그 자료제출을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긴급동의를 하신 건가요?

○**이정미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지금 의결할 수가 없어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간사님들도 안 오셨는데 그 사이에 논의를 좀 더 하고 회의 끝 무렵에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큰 명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현행 68시간 근로 관행이 근로자한테 지나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줄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노사 합의 사안이나 아니면 장관께서 말하시는 대로 법률 개정사항이나, 법률의 개정이 과연 타당한 것이나

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보도자료에서 68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15만 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하셨습니다. 이것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내신 거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엇그저께 금방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신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사실상 대통령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에서는 곧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52시간 계산은 노동부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장관님도 이 15만 개 일자리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서 계산하신 것 아닌가요? 그 차이가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 계산하고 똑같은 명제인데 50만 개하고 15만 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죄송합니다. 깊이 이렇게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방식에다 플러스 연차를 다 소진하고 다른 부분도 아마 가미를 해서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차도 다 쓰고 하는 것들이 포함된……

○**이상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이것이 어떤 계산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정책 공약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 하겠다 하면서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신규 채용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물론 장관께서는 정치인의 어떤 공약을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81만 개, 공공분야 81만 개라는 것이 대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좀…… 고용부장관으로서 이런 말하자면 비용추계, 공공분야의 수요 같은 것이 과연 이렇게 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가능하신가 한번, 불가능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공부문 전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상돈 위원** 그래서 좌우간 똑같은 계산으로 15만 개 일자리, 50만 개 일자리는 좀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앞에 이상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달성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은 바로 현행법에서 정해놓은 주 40시간, 노동자 동의하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만들어 왔고 그것이 노동부의 지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가오는 고용절벽에 대비해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많이 창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더 과감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삼화 위원** 그동안 장시간근로 관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적게 채용하려는 기업 그리고 연장이든지 야간이든지 휴일근로를 해서라도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노동자, 즉 노사의 이해가 일치되어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전제는 달았지만 특별연장근로 8시간 도입, 주 60시간 근로시간 연장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2020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아마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원회에서도 이철수 서울대교수가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단위는 7일이고 40+12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주 40시간제 원칙을 재확인하되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위법 상태가 되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면별조항을 도입하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방법론으로 면별조항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김삼화 위원** 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한데 이것이 아마 정부가, 사실상 정부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장시간근로 관행을 계속 그때까지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타협을 할 때 합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법 이전에 맞교대하는 근로자들 4조 3교대나 이렇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보면 근로자들이 감내, 내가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고 있는 분들의 감내하는 임금 수준 감소가 10만 원 전후 정도였습니다. 더 많이, 만약에 전체 임금의 한 20%, 30%가 줄어들면 감내하기 어렵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기업의 사정을 감안했고, 과거에 저희들이 48에서 44, 44에서 40시간 갈 때도 다섯 단계, 여섯 단계로 줄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4년에 걸쳐서 줄여 가되 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100인 이하 규모별로 줄여 가되 엄격하게 규율을 해서, 노사가 합의하고 사유를 명시하고 엄격하게 규율해서 휴일 날, 그것은 평일은 안 되고요. 휴일 날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하자라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김삼화 위원** 노동시간이 제일 길고 또 기업의 지불 여력도 낮고 한 곳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그런 정도의 사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런데 오히려 10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도 2023년까지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거기에는 맨 먼저 52시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과거에는 규모별로 4시간을 줄이는 것도 단계적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이 이루

어지면 바로 8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앞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시간을 너무 넓게, 길게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시간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서 주 60시간제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00인 이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대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장기간 이렇게 허용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유효기간의 연장을 재검토해서 다시 또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장관님이 연일 강조하고 계시는 고용절벽 상황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주 52시간제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26개 특례업종에서 16개를 줄여서 10개 특례업종으로 줄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법이 바뀌어도 여전히 특례업종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상한제를 두기로 의견은 거의 모아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상한제를 저도 법률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법률에 명시할지 아니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지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이 부분을 법률에 정하고 근로시간 상한을 주 60시간 정도로 하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근로일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0시간의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갖게 하자 그런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60시간제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질의 주실 때 제가 중간에 한 번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48에서 44, 40으로

줄어올 때 노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착을 하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했던 부분을 줄여서 했고요. 다만 이번에는 16시간을 줄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특별연장급여 8시간을 두되 특별연장급여를 쓸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60시간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10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저희들이 노사정 간에 합의할 때, 이 일정대로 합의할 때 1000인 이상에도 아까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맨 먼저 68에서 60으로, 이것을 도입하더라도 1000인 이상은 60으로 1년 만에 딱 8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연장은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노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왜 속도를 느리게 하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8에서 44, 44에서 40으로 할 때 4시간 줄이는 데도 사오 년을 단계별로 했습니다. 사회적 충격을 줄이면서 또 기왕이면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해야 연착륙이 된다고 봤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인해서 전체 총 근로시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2300시간대에서 이제 2060시간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16시간을 줄이는 문제라서 제도는 이렇게 설계를 하고 다만 과거에도 보면 대기업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중소기업이 지켜야 되는 법정 시간이 아니 오더라도 근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시행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로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일찍 시행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법으로 이것을 해 버렸을 때는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 때문에 또 다른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례업종과 관련해서 60시간 상한제나 10시간 연속 휴일제는 거기서 많은 논의를 해서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26개 중에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근로시간 적용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기왕에 적용했던 근로자 숫자보다 더 많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10시간 일을 하고 10시간은 최소한 또는 그 이상 일정 시간을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자는 말씀들이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또 법안도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저희 고민점은 과거에 전형적인 제조업을 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4차산업 형태에서 계약의 형태나 일하는 방법이나 일하는 시간이 당사자 위주로 많이 흘러가는데 일관되게 이렇게 딱 규율을 했을 경우에 오는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것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득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노동시간, 임금체불 이런 시장 문제를 지금 장관님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제2항이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듯이 우리 현실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왜 시장 문제를 모두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고 노사, 시장의 당사자들은 다 빠져 있을까? 이것을 좀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희망재단 관련입니다. 최근 설립 과정에서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본 위원으로서 이런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동안 이기권 장관 그리고 노동부 공무원들께서 정직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 청년희망재단 관련해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청년희망재단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저기 화면에서 보듯이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순수 민간재단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

금 현실적으로 ‘청와대 주도다’ 하는 것들이 2차 공판, 4차 공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순수 민간단체의 자발적 모금이었다 이렇게 계속 답변해 오셨는데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엔. 그것은 9월 15일 아침에 노사정 대타협 사인을 하고, 서명을 노사정 대표들이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국무회의가 열려서 대통령께서 사회지도층이 대타협 정신을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좋겠다고 국무회의에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토대로 9월 16일에 총리 주재로 관계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희망편드를 만들어 보자, 거기에 각계의 지도층들이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데……

○이용득 위원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지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봤을 때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국무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득 위원 순수 민간재단이었고 자발적인 모금이었다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장관께서는 계속 그동안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진실된 얘기들이 서로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안종범 2차 형사공판, 지난주지요. 거기에서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서 전경련의 이 모상무는 청와대가 청년희망펀드 목표모금액을 지시했고 박 모 전무가 4대 그룹에 전달했다, 박 모 전무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지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에게 전부 청와대 의사를 그대로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인물인데.

그리고 이 모 팀장이 공판에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미르재단 설립인가를 추진하면서 ‘창립총회 다 필요없다’, 왜냐하면 청년희망펀드가 미르재단보다 며칠 앞서서 설립이 됐으니까 미르재단에서 ‘창립총회 필요 없고 서면으로 해서 날 인하면 돼. 청년희망재단도 다 그렇게 처리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검찰 조사에서 나와 있고요. 심한 경우는 이따 오후에 모 언론에 밝혀질 텐데 ‘청년희망재단처럼 가라로 만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희망재단이

미르나 K스포츠를 만드는 데 앞서서 편법, 불법의 모든 사례가 됐고 전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계속 순수 민간단체고 자발적 모금이라고 한 데 대해서 최근 들어서 너무 저로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안중범 수석이 청년희망재단 모금을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어저께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또 실토한 내용입니다. 결국 전경련이 지금 책임을 피해가려고 이런 진실들을 다 실토하고 있지만 청와대 주도하에서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강제모금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발기인이셨고 거기의 이사이십니다, 이기권 장관님께서. 이렇게 청와대가 완전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만들었다는 이 사실 모르셨습니까? 그냥 국무회의 그날 얘기 나온 것 이 정도만 아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였고 합의해서 노총에서 중집회에 통과를 해서 15일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인이 됐고 그날 국무회의 때 제의가 있어서…… 그다음에 16일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해서 국무총리 주재 관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것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큰 방향은 청년일자리 도움에 펀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단 방식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러면 사회 각 층에 기금을 받는 방식을 공익신탁 방식으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딘가 주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펀드 주체에 대한 희망재단의…… 홈페이지는 문화부가 잘 아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 오다가,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 관련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도 해본 경험도 있고, IMF 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을 파견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9월 16일에 출발해서 과정 과정을 국무총리도 언론 나가서 브리핑을 하고 저희들도 진행 상황을 그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이, 국회의장단께서도 다 참여해 주시고 각계 스포츠선수, 아주 어려운 근로자들, 학생들까지 다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재단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10월 14일에 노사정 대표들이 발기인이 되어서 일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몇 분을 모시고 발기인대회를 해서 15일에 신청을 해서 21일에 저희들이 사후에 검토를 해서 설립인가를 내주고 인가가 난 뒤로부터는 재단에서 즉 실제 거기에 이사장도 위촉이 됐고 이사도 상임이사도 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즉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익신탁에 넣었던 부분은 다 개인이 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된 이후는 재단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사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했지만 어디에서 돈을 낸다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득 위원 1분만 더……

○위원장 홍영표 예, 넣어놨습니다.

○이용득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목적사업도 불분명했고 어쨌든 장관님 답변을 다 들어보고 나서도 최상목 비서관이 ‘청년희망펀드처럼 가라로 하면 돼’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위법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발적 모금 거짓이었다, 순수 민간재단 거짓이었다, 다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런 모금에는 어떤 대가성이 있다, 노동개혁 부분 등등의 것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박근혜표 노동개혁을 대가성으로 해서 한 부분이라면 이 노동개혁 부분이 지금 전면 중단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노동부의 책임성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탁 대가라고 하면 뇌물죄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특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년희망재단이 노동개혁 관련 모든 과정과 연관된 것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환노위 차원에서 특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만약에 이 모든 과정에서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법에 따라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표**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희망재단도 저는 미르나 K스포츠재단하고 마찬가지로 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을 걷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청년희망재단도 그런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기권 장관께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초기에 대통령도 냈고 국회부의장도 냈으니까 그렇다 그것은 1500억 중에서 43억 걷을 때까지 해당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돈을 걷는 데 앞장섰던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요, 부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속속 특검과 검찰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여전히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저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한정에 감사님 계시는데 한번 감사 간 협의도 해주시고, 2월 국회에서라도 다음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의결해서 특검에다 촉구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장님,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이사로 참여해서 늘 검토를 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 뒤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개인들이 내고 있는 부분은 재단이 했기 때문에 그 모금 과정은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실제 모릅니다, 그 과정은.

○**위원장 홍영표** 아무튼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면 이것도 국감에서의 위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여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에 위원** 법정근로시간 한도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정근로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법을 몇 번씩 바꾸어 가면서……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노동시간은 줄지를 않고 있어요. 1990년 1월부터 주 48시간이 됐으니까요,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당 68시간 근무 가능했습니다. 1주에 48시간, 그때는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했으니까 거기다가 연장근무 12시간, 그러면 일요일 하나가 휴일근무, 8시간 할 수 있습니다. 주당 68시간 가능했지요.

2004년에 저희가 주 40시간을 도입하기 전까지 보면 그때는 44시간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당 44시간, 월·화·수·목·금·토, 토요일 9시부터 4시간 근무했지요. 그리고 연장근무 12시간, 역시 휴일근무 일요일 하나 나옵니다, 8시간. 그러면 2004년 7월까지의 맥시멈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주당 근로시간은 64시간이었습니다.

2004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 40시간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40시간 더하기 12시간, 그런데 휴일근무 토요일·일요일 2개가 나와요.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근무로 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휴일근무로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끔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그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주당 68시간, 오히려 주 44시간일 때보다도 4시간이 다시 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나가자라고 해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그 법을 뛰어넘는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30~40년 동안 근로시간이 전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근로시간이 안 준다고, 제도적으로 불비하니까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부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 뒤에 앉아 계신…… 똑바로 앉아 계세요. 자세가 그게 됩니까?

거기다가 주 40시간 도입하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게 주 5일 근무냐, 주 6일 근무냐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 달라'라고 했더니 '주 5일 동안 40시간 근무해도 상관없고 주 6일간 40시간 근무해도 상관없다. 5일이나 6일이나 상관없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에서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그 회사는 연장근무 12시간하고 8시간 휴일근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 회사는 60시간이 근무가 되는 것이지요.

노동부가 일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근로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법상 행정해석이라고 하는 게 노동시장에서의 오류나 노동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행정해석이 아니라…… 저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행정해석이에요? 저게 입법부가 잘못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정지침과 행정해석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고, 입법부의 취지에 반하는 행정해석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먼저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입법부 탓을 합니까, 입법부 탓을?

장관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회의 시작 전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께서도 한정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더 포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중간에 답변도 올렸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입법부 탓을 하거나 입법부가 소홀히 했다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안을 놓고 고민할 때 우리……

○**한정애 위원** 장관님,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입법부가 잘못해서 여전히 주당 68시간, 1990년 1980년 이후에 계속 68시간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계속 바꾸어서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법에 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요, 그런데 행정부가 그것을 입법부가 원하는 취지대로 제대로 시장이 작동되게끔 해 온 것이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48에서 44, 40으로 오는 과정에 소정근로시간과 총근로 가능 시간에 대한 이 부분의 고민들이…… 저희가 53년도에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일본하고 비슷한 체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중근로와 휴일근로라는 것을 넣어서.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해석해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는 총근로를 초과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본인들도 일을 좀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기업도 빨리 성장을 해야 하니까 풀가동하고 그런 것들이 맞닥뜨려져서 휴일근로와 소정근로 플러스 연장 이 3개를 구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법을 48에서 줄여 가는 과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총근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소정근로를 줄이는 쪽에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40시간, 44시간을 6일 근로하느냐, 5일 근로하느냐, 4일 근로하느냐에 따라서 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고한도의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48에서 44, 40으로 줄어오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2300시간 정도의 일하는 시간이 2061시간으로 줄었고, 이번에 입법하면서 저런 부분을 명확히 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과거보다 더 커질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저 행정해석을 입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가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노동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한정애 위원** 최소한 입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6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내려올 때는 총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게는 했었어

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950년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때 사실……

○**한정애 위원** 그 행정해석이 잘못된 것에 대한 노동부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53년도부터……

○**한정애 위원** 노동부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실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킨,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노사가 담합해서 노동시간을 길게 가져갔다 그래요. 그 해석을 준 게 누군데, 그 해석을 누가 해 줬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사가 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담합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제 자체에 다른 나라에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53년도부터 저희들이 일관되게 해석을 해 왔고, 그다음에 해석을 중간에 바꾸게 되면 법 위반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총근로에 대해서는 해석보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봐 왔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행정부의 사과가 전제되어야지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행정해석을 수많은 판례나 이런 것에 비해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고집해 온, 그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킨,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 이것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홍영표**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를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저도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며칠 전에도 이런 인터뷰를 하나, 15일에 연합뉴스하고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다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처리해 주지 않아 가지고, 곧 고용절벽이 닥칠 텐데 국회가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협조를 안 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강병원 위원** 취지는 아니셨지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위원님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병원 위원** 하여튼 그 기사를 읽었던 우리 많은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분노를 했을 겁니다. 아마 다시 한 번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님의 이름을 다 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보도 해명자료를 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랬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 내용 같은 경우 장관님도 다 보고 받으시고 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돼서 저희들이 반드시 고치라고 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데 봅시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1면, 2면에 걸쳐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서 해명한 것은 홍영표 위원장이 반대했다라는 그 내용만을 해명했지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우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강병원 위원** 아, 우선 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

○**강병원 위원** 아니요, 해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잖아요. ‘홍영표 위원장께서 반대했다’ 이것만을 해명했어요. 나머지 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 기사가 뭔가 오해가 있거나 내 취지와 다르거나 잘못됐다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그런 것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노동개혁 4법 처리에 반대한 노동운동가 출신 홍영표 국회 위원장’, 이 처리에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을 뿐 나머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의 철학이, 소신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그대로 다 녹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7월

예비비 문제 가지고 우리 결산 국회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 고용노동부가 ‘불 꺼진 국회’라고 해 가지고 홍보비를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도 얼마나 환노위 상임위원회장이 뜨거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때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때도 사과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랬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도 그때 조선의원으로서 처음 장관님께 질의했던 게 뭐였다면 19대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던 노동4 그 계약법을 어떻게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다시 재발의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 4법이 문제가 돼서 국회가 혼란스러웠고 상임위가 정말 제대로 안 굴러갔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느끼고 이런 취지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봅시다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토씨 하나 안 고치고 던졌다는 것은 뭘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불 꺼진 국회’ 그리고 그 법을 토씨 하나 안 고치고 던지는 것, 그리고 조선일보에 난 기사,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 이 모든 것을 보면 장관이 국회 입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우선 어제 기사 관련해서……

○**강병원 위원** 기사 얘기는 더 할 것 없어요, 다 들었으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20대 국회가 개원이 된 뒤로 19대 말미에 있었던 4법안대로 제출되게 된 배경은 제가 그 뒤로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듯이 각 개별법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은 되어 있지만 합의 과정에 서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장관께서 정말 그런 법들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자 한다면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19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법을 그대로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제출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이 아니라 위원들과 함께 정말 파견노동자들의

문제, 일자리 절벽의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봅시다라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환노위원들을 만나고 논의를 했었어야지 그 법을 그대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노동4법을 패키지로 고민하다가 근로기준법만이라도 하나 처리해 달라고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랬습니다. 우선 시급한 법을 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4법을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서 저희 환노위원들한테 적어도 ‘죄송합니다. 좀 무리였습니다’라는 말은 한 자락 깔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전이 안 되는 것은 전부 제가 설명드리고 또 내용을 상의드리는 노력의 부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강병원 위원** 됐습니다.

봅시다. 근로기준법 55조를 보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1주일 7일 중에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주일 근무하면, ‘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하루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법이 해석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1주일이라 하면 7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법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우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는 1주일을 뭘로……

○**강병원 위원** 아니, 이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55조에 보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심지어 장관님 뒤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모든 간부들도 이 말 뜻은 1주일이라면 그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판결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강병원 위원 많이 걸립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게 14개 판결이 있고요, 그중에 11 대 3으로 장관의 해석이 틀리다라고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은 11 대 3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혼자서 1주일 근무를 해야 하루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는, 그래서 1주일이 8일이 된다는 해괴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기간을 1주일로 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병원 위원 그래서 1주일 일 시키실 겁니까? 더 늘리시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더 늘리세요.

1분만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홍영표 예.

○강병원 위원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부장관 아십니까?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잘못된 법해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사업주 중심의 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해석도 그랬고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도 그랬습니다. 다 법에서 번번이 깨지고 있습니다. 휴일연장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말하는 근로시간단축법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68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근로기준법을 봐도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40시간, 12시간은 나와 있어도 도대체 될 숫자를 더해서 68시간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관의 해석을 자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단축입니까? 장관이 말하는 근로시간단축법은 특별연장 조항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복 가산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시간연장법이자

임금삭감법입니다. 이 잘못된 해석으로 술한 노사 간에 소송이 붙고 있고, 산업현장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지금 장관께서 또다시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미명하에 입법부를 마치 놓고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행정해석대로 법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생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장관의 생떼를, 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제2의 파견법과 같은 것을 또다시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인터뷰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어른이 청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이 말하는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임금 삭감에 대한 불법을 합법화해 주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더 소통을 하라는 책적으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해석을 바꿨을 경우에 처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입법으로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입법안에 담았고, 그래서 줄여 가는 과정은 노사정 합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장관님,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개약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9일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내용 보시면 ‘노동개혁은 입법 부진 등으로 마무리가 지연된다.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주당 68시간 까지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주당 52시간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데에는 반대할 위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관이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해서 주당 62시간까지 하자는 부분, 또 대법원 확정판결이 야당의 주장대로 나오면 법 개정이 어려우니까 그 이전에 빨리 하자라고 재촉하는 장관의 모습이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간된 비정규직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100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장관님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도 우리 규모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정부정책 어디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규모가 자연스러운 시장현상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전환을 제고 등의 관리 목표를 두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등 입구 제한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관련된 자료라든지 대책을 보면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지금 구태의연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말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선 당시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공공부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공공부문에 저희들이 주력하면서 민간으로 확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알리오를, 공시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 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드는데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문제는 적용 법률조차 없는 사실상의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공부문이 간접고용을 더 확대시켜 왔다는 겁니다. 기간제를 문제 삼으니까 간접고용으로 지금 회피, 도망간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국무회의장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협의를 하거나 상의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특히 격차 해소를 강조해 주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또 비정규직 형태별로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체적 규모 그다음에 격차 해소……

○**송옥주 위원** 지금까지는 안 만드셨어요, 로드맵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것도 했는데요. 또 하나는 사회보험 등등의 몇 가지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이 32.6% 정도 됩니다,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그런데 문제는……

○**송옥주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일자리 격차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랑 아울러서 나중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다 질의 주시면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대부분 격차 해소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53.5%로 역대 최대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월 279만 원을 받아 갈 때 비정규직은 149만 원을 지금 받아 갑니다. 더 큰 문제는 2012년~2016년 사이에 정규직은 임금이 3.25%가 올랐는데 비정규직은 1.78%가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규직이 과도하게 임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논리를 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통계를 보면 정규직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조금 받아 가서 격차가 더 극대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빨간 표시 한 부분인데요. 2016년 3월 기준으로 남성이 100원을 받으면 여성이 65원을 받게 됩니다. 개선되고 있다고는 해도 아주 미미한 부분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정규직 남성이 100원을 받을 때는 비정규직 여성은 43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별과 고용 형태의 이중적인 차별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돼 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보면 상당히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 보완·정비, 근로감독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 가지고 성별 격차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아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께서 말씀하시는 하는데 지금 근로시간과 같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것처럼 호도하기보다는 정말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여성과 남성의 성별 격차나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 주신 것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법개정이 어렵다라고 한 부분은 전에 존경하는 홍

영표 위원장님이 환노위에 계실 때 저희들이 총연장근로를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입법안을 제출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정해져 버리면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하고 그다음에 간접고용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이 삼분법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무기계약직은 거기에 직무급 형태의 정규직으로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정규직도 무기계약직도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법률용어로는.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 주셔서 가지고 청소 직고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듯이. 그래서 무기계약직 대 유기계약직으로 보는 거지 정규직 있고 무기계약직 있고 다시 비정규직, 삼분법은 저희들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어떤 기간이 없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격차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는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근무 한 기간을 통제를 해서 보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격차가 100 대 90, 94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느끼고 그런 기간 근무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100 대 65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십 몇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을 놓고 봤을 때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2%밖에 없습니다. 30%가 전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70%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했을 때 비로소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금년도의 방향을 격차 해소 쪽에 가장 집중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장관님, 기본적으로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삼분류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실태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근로조건이 어떤지를 아셔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강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 한정에 위원님이 먼저네요.

○한정애 위원 장관께,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위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실지 여쭙실지는 모르겠는데 한기대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사업에서 채용 공고를 냈을 때……

화면 필요 없습니다. 안 올리셔도 돼요.

사위 되시는 분이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던 업무는 일반행정직이었습니다, 일반행정. 물론 한기대는 이번에 사람을 채용할 때는 NCS 방식에 따라 채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배우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별도로 습득한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판단해서, 그게 바로 NCS지요. NCS에 기반한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위 되시는 분은 신입 직원에 신청을 하시면서 일반행정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행정직은 이렇습니다. 물론 학력 및 전공제한 없습니다. 모든 분야 다 그랬습니다. 다만 일반행정직은 법무, 기획예산, 회계관리 등 행정관련 경력자 또는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기록카드나 응시원서를 보면 사위 되시는 분은 본인의 전공이 소프트웨어학과였어요. 전산과 관련된 학과인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법무나 기획예산, 회계관리 등

행정 관련한 어떤 연수나 교육훈련이나 근무 경력이 있냐? 전혀 전무합니다. 그냥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인 거지요, 관심이 있는 자.

13 대 1 정도의 경쟁을 물리치고 채용이 됐는데 그냥 관심이 있는 자,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가 요즘 같은 시기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해당 분야에 본인이 지원을 하면 자기소개서에 최소한 본인의 전공과는, 또는 본인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던 분야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자세하게 적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적고 오타나 문구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은 최소한 검토는 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직이해 부분에. 간략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유용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현실적인 업무에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에 바로 적용할 시점 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업무에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에 바로 적용할 시점 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장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조직이해 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학 진학과 학업에 쏟아붓는 비용의 낭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 다른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이것보다 더 나쁘게 쓴 것인지, 달랑 A4용지 한 장을 내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써 가지고 냈는데, 앞뒤 문장도 안 맞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해당 업무에 정말 관심이 있다고, 해당 업무에 대한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이나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요. 이 이상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니까 관련 자료를 내라, 관련 자료를 내고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평점을 어떻게 매긴 것인지 자료를 내라, 그것이 정말 문제가 없이 뗏뗏

하게……

그리고 직업능력심사평가를 하는 새로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는 데에 사람을 채용하는데 노동부 이렇게 채용합니까? 노동부가 얘기하는 NCS 기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NCS 어느 국장이 담당합니까?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이게 NCS에 기반한 응시원서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말씀하신 대로 NCS 기반의 채용이라는 것은 학벌이나 학력이나 스펙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사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은 각자가 써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직무능력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직무기술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 직무에 맞는 사람들 또는 경력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로 면접을 중시해서 뽑는 것이 NCS 기반의 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심사평가원……

○**한정애 위원** 아니, 잠시만요. NCS 기반한 것이 면접을 봐서 얼마나 그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보고 뽑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아니,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한정애 위원** 지금 대한민국 청년 중에 공공기관의 채용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대보세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그 업무의 적합도, 그러니까……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업무 적합도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관련해서……

○**한정애 위원** 업무에 적합한지에 관련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한정애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NCS에 기반한 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 경력 그런 것을 보는 것은 맞는데……

○**한정애 위원** 경력이 전무하고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그게……

○**한정애 위원** 교육을 받은 게 전무하고 훈련을 받은 게 전무하고 연수를 받은 게 전무하고 그런데 이것을 NCS에 기반해서 채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채용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정애 위원** 보통의 경우에는 만약 이런 사람들만 왔다라고 하면 재공고를 내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보통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경우라는 게 아까 서류심사를 일단 보고 면접까지 봐서 재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정애 위원** 보통의 경우에는 서류가 이러면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지요, NCS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소개서인데. 전혀 NCS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서류심사에 합격한다고요, 열정만을 가지고? 열정이 서류에도 보입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조금 어려운 게 불합격자 된 응시자들과……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NCS에 기반한 능력 베이스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서류에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교육이나 연수, 훈련을 받은 것이 있을 때 서류심사에서 합격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서류에는 아닌 게 아니라 열정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열정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을 집어넣었는데도……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일반행정 분야……

○**한정애 위원** 말이 안 되는 문장을 집어넣었는데

데도 이것을 열정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 한 거예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하게 전공 분야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 같은 경우는 경력이나 자격에 대한 요구를……

○**한정애 위원** 국장님.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예.

○**한정애 위원** 노동부 산하기관 다 이런 식으로 채용합니까? 노동부 산하기관, 공공기관들 다 이런 식으로 채용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을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한정애 위원님 질의는 마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30초만……

○**위원장 홍영표** 장관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박 군이 한기대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들어간 것은 15년 2월이고 저희 딸애와 사귀는 것은 15년 8월이고 기간제로 취업한 그 이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월에 결혼을 염두해서 사귀는다고 그래서 저한테 소개해 왔는데 그때 제가 장관이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왜 거기를 지원하게 됐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선 비정규직이기는 한데 급여가 높고 또 그 기관 전체가 훈련을 담당하는 데라 훈련의 대부분이 이공계 쪽이라서 지원을 하게 됐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정애 위원** 장관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사귀었느냐?’ 이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노동부는, 노동부 산하기관은 이런 식으로 NCS 기반한 채용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응시원서를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이런 사람을 서류심사에 합격을 시키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본인이 이공계인데 이공계에 응시한 게

아니예요. 이공계인데 문과계열에 응시하셨어요, 행정직에. 만약에 본인이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전산통계 쪽에 응시를 했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불가능했어요, 경력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력직만 했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신규가 갈 수 있는데 거기밖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갈 수 있는데 전공하고도 맞지 아니하고 교육도 받지 아니하고 훈련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 응시원서를 가지고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노동부가 일을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 근로시간도 이렇게 되는 거지요.

노동부가 일을 이렇게 해요.

○**위원장 홍영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 55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장관께서는 좀 특이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을 근무해야 하루 유급휴가를 준다, 그러면 일주일이 8일이나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5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봅시다. 그런데 장관께서 연합뉴스하고 1월 15일에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일문일답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해명자료도 내지 않으셨고 정정보도도 청구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것도 보도가 틀렸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중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우리나라는 주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 1항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장관은 이 조항을 주중 40시간이라고 해석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위원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고 저의 해석과 입법의 차이를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 정부는 53년도 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휴일하고 주중을

구별해서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병원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53년도 법으로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4년의 개정된 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두 번의 소정근로시간을 바꿨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어느 법에 따라 가지고 법 집행을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을……

○강병원 위원 언제입니까? 2004년에 바뀐 근로기준법입니까, 아니면 53년도 기준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당연히 최근에 바뀐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강병원 위원 그러면 50조 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 하는 조항과 장관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주중 40시간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그때 48에서 44, 40으로 고쳐 갈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48을 44로, 다시 44를 40으로 그 부분만 고쳤다는 거지요.

○강병원 위원 좋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소정근로라는 말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50조 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소정근로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그것을 통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것은 장관이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게 일관되게 저희 정부가 해석해 왔다는 겁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게 언제부터요? 53년도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어느 법 가지고 장관은 고용노동부를 통괄해야 됩니까? 2004년 법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두 번에 걸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얘기한 뒤의 연장, 휴일 이런 조항은 손을 안 대고 48시간으로 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44로, 다시 그것을 40으로 이 부분만 고쳤기 때문에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법 개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석을 일관되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원 위원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뒤에 계신 간부들한테 장관의 그 해석과 정말 근로기준법에 나온 이 법 조항과 어떤 것이 맞는지 한 분 한 분 여쭙 보고 싶은 생각이요. 제가 장관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답에 보면 휴일근로를 16시간이라고 해 놨습니다. 만약에 2004년 개정 전이면 휴일근로는 몇 시간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48시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휴일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 유급휴일로 했던 겁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노동시장 관련해 가지고 추구해 왔던 것은 뭐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장관 해석대로 하면 노동시간이 단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2300시간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이 지금은 2060시간대로 떨어졌습니다.

○강병원 위원 아니, 그 조항에 따르면 줄어든 겁니다, 안 줄어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저희가 소정근로시간을……

○강병원 위원 48시간하고 휴일근로 8시간이면 몇 시간입니까? 56시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 근로시간은 줄여 왔고요. 연장근로는……

○강병원 위원 소정근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법에 없는 얘기입니다. 장관께서 혼자 하시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근로시간을 줄이면 이게 고용절벽 해소책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일자리가 모두 몇 개 생긴다고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 용역으로 하면 연장근로가 줄어드는 것만 해도 15만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게 이제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주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52시간까지 줄어드는……

○강병원 위원 52시간으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용절벽 해소책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또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40만 원이 줄고 중소기업 가동이 멈춘다라고도 얘기하셨어요. 모순되는 말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게 일시에 했을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합의를 할 때 일시에 했을 때 오는 노사가 겪어야 될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네 단계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에 44에서 40 줄일 때도 몇 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했었습니다. 규모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병원 위원** 보십시오.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장관께서 이 기업들을 정말 챙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충격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봐서는 기업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일자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장관이 앞장서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일자리를 채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줄고 중소기업이 가동이 멈춘다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장관께서 고심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가동이 멈춘다고 했는데요. 그 중소기업이 정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그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킬 것입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겠지요. 그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 장관께서 푸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문제들의 문제점은 장관께서 끊임없이 이 법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 전에, 며칠입니까? 17일 날 대교가 직급정년 도달자들의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곧 대법원으로 가겠지요? 아마 이 근로시간에 대한

14건의 대법원 판결들도 곧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장관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해대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아마 이 기업들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봤던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 책임이 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몰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법해석을 철회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기업의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 정당한 권리도 찾아 주는 것입니다. 또 산업현장을 소송으로, 불화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잘못된 법해석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철회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노사정 간에 48에서 44 그다음에 44에서 40, 이번에 다시 휴일근로를 연장에 포함하는 이 과정의 등등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철학은 근로자들의 임금 감축의 우려,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근로시간이 많은데요. 거기서 사람을 지금도 채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단축 과정이나 합산 내용은 노사정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장 낮은 쪽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쪽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확보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과건 단속이랄지 또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물류업종의 가장 낮은 단계 3차 도급업체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원청의 일정 부분의 노력이 또는 법 위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계층적으로 지도를 해 가는 등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원 위원** 잠깐만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휴일 연장근로 포함 관련해서 대법원에 계류된 게 모두 14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2심 법원까지의 판단에서는 11 대 3으로 장관의, 고용노동부의 법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계속 판결들이 나

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이 대법원 판결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에 대한 법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뒤에 상당히, 사업주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후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11대 3이지만 대법원에서는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으로 판결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18대 국회 있을 때 저희들이 근로시간 전체를, 총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법 개정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때는 중소기업 업계가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판결이 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52시간으로 우리 사회가 딱 뚫을 때 그러면 40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평균 줄어야 되고, 갑자기 60몇 시간씩 했던 사업장은 52로 줄었을 때 그 충격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 전에 어느 쪽으로 나든 사회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고 이것은 또 형사처벌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입법을 해주는 것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늘 드리는데 돌이켜 보면, 어제 그 기사 사건도 그렇고 돌이켜 보면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각각 개별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안을 만드시고 당사자들을 접촉하고 이런 부분을 다 제가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표현이 부족하고 또 그 과정에 특히 1월은 어렵다고 봐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위원장 홍영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소집된 회의입니다마는 새누리당하고 또 바른정당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주요한 의제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일자리다,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또 고령자라든지 또 취약계층에서의 어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성장률이 1%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15억을 투자하면 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도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면서 과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당연히 저는 OECD나 선진국에서 한 것처럼, 스웨덴, 스위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안 생기니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월차 문제, 지금 연월차를 제대로 돈으로 받아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음 해에 적치하거나 이렇지 않고 만약에 연월차를 제대로 써서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계기로 활용을 한다면 한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소위 소정근로라는 개념, 주중 40시간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장관계서는 그런 현장에서 일해 보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돈만 주면 24시간도 일할 수 있다’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7일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고용부 관료들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10시간 일하면 그것보다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해라’ 이것은 인간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한 이 철학과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68시간, 70시간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용을 해 왔는데 갑자기 52시간 하면 충격이 있겠지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겁니다.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것 국회가 만질 일이 아니다, 왜?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 왔다고,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진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대해서 해괴한 해석을 해 놓고 '우리가 잘해 왔다. 지금도 그것이 정당하다' 하니까, 대법 판결을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대법에서,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주 5일인지 7일인지 그 판결입니다. 저는 그것이 나온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주중근로니 소정근로니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걸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우기는 상황이 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법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에서 어떻게 판결하는지 기다려 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주일은 7일이고 주 40시간을 지켜야 된다, 초과근로 12시간 포함해서 52시간' 그렇게 되면 그 뒤에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산업계의 충격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결론을 오늘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다른 한기대 채용 문제라든지 청년희망재단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고용노동부가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혼란한 상태이고 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자리를 포함한 이런 노동문제를 어떻게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지,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도 내리고 교통도 불편한데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오늘 긴급히 소집한 상임위원회에 많이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 병 원	김 삼 화	서 형 수	송 옥 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	진	호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관	이	기	권
차	관	고	영	선
기 획 조 정 실 장		박	종	길
고 용 정 책 실 장		문	기	섭
노 동 시 장 정 책 관		김	경	선
고용서비스정책관		장	신	철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	영	돈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	성	희
직업능력정책국장		권	기	섭
노사협력정책관		임	서	정
근로기준정책관		정	지	원
공공노사정책관		황	보	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화	진
정 책 기 획 관		김	용	호
국 제 협 력 관		정	민	오
대 변 인		정	형	우
감 사 관		조	병	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 장		김	기	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28. 장석춘·임이자·김승희·황영철·곽대훈·박덕흠·권석창·정병국·문진국·배덕광 의원 발의)

12월 29일 회부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함진규·박맹우·김도읍·이장우·김종태·윤영석·이우현·김성찬·염동열·이명수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29. 문진국 · 장석춘 · 김세연 · 임이자 · 민경욱 · 김석기 · 김현아 · 정갑윤 · 성일중 · 박성중 · 김규환 · 강석호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홍문종 · 강석호 · 윤종필 · 金成泰 · 김한표 · 김승희 · 이양수 ·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 2016. 12. 29. 정부 제출)

이상 17건 12월 30일 회부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30. 강병원 · 강훈식 · 송옥주 · 윤후덕 · 서형수 · 소병훈 · 홍영표 · 이용득 · 김정우 · 박용진 · 신창현 · 안규백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강병원 · 강훈식 · 송옥주 · 윤후덕 · 서형수 · 소병훈 · 홍영표 · 이용득 · 김정우 · 박용진 · 신창현 · 안규백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30. 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홍문종 · 강석호 · 윤종필 · 김한표 · 김승희 · 이양수 · 이명수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홍문종 · 강석호 · 김명연 · 金成泰 · 김한표 · 이양수 · 박대출 의원 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30. 정부 제출)

이상 5건 2017년 1월 2일 회부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7. 1. 2. 이찬열 · 황주홍 · 김종희 · 박광운 ·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해숙 · 박주민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 2. 송옥주 · 이용득 · 이동섭 · 한정애 · 노웅래 · 서형수 · 박재호 · 박찬대 · 강병원 · 박남춘 · 전해철 · 남인순 · 박홍근 · 신창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일 회부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7. 1. 4. 홍영표 · 김병욱 · 장정숙 · 윤후덕 · 서영교 · 박주민 · 권미혁 · 김경협 · 송옥주 · 신창현 · 송영길 · 윤종오 · 이해찬 · 소병훈 · 이용득 · 강병원 · 이상민 의원 발의)

1월 5일 회부됨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7. 1. 9. 신보라 · 김현아 · 이종배 · 이종구 · 박덕흠 · 윤종필 · 정갑윤 · 함진규 · 김성찬 · 권석창 · 이종명 · 윤한홍 의원 발의)

1월 10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1. 12. 서형수 · 권미혁 · 서영교 · 김경수 · 전재수 · 한정애 · 강병원 · 민홍철 · 김해영 · 최인호 · 송옥주 · 김영춘 의원 발의)

1월 13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1. 12. 서형수 · 권미혁 · 박재호 · 전재수 · 한정애 · 강병원 · 민홍철 · 김해영 · 최인호 · 송옥주 · 김영춘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정인화·주승용·윤영일·홍문표·김종희·이동섭·최도자·이훈·채이배·황주홍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한정애·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양승조·이용득·정성호·홍영표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문진국·이종명·장석춘·김종대·김석기·배덕광·황주홍·송희경·성일종·남인순·신상진·심재철·주광덕·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16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1. 16. 최도자·윤소하·김중로·김경진·손금주·이정미·인재근·김상희·김종희·장정숙·김영춘·정인화·김광수·전혜숙·채이배·김삼화·황주홍·김정우·박주민·박주현·이용주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7. 1. 16. 우원식·최인호·이학영·윤종오·송옥주·안규백·이용득·박주민·김해영·윤소하·김정우·조배숙·기동민·서영교·김병원·전혜숙·인재근·황주홍·이재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7일 회부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홍영표·박재호·김경수·우원식·남인순·문미옥·한정애·이용득·이훈·최인호·박광온·권미혁·김정우·신창현·양승조·김현미·송옥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김삼화·조배숙·장정숙·박선숙·김관영·최도자·황주홍·정인화·윤영일·오세정·채이배·김광수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김삼화·김동철·장정숙·박선숙·

김관영·최도자·황주홍·정인화·윤영일·오세정·조배숙·채이배·김광수·이동섭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강병원·남인순·김영주·유승희·문미옥·어기구·신창현·박찬대·김병원·이원옥·서영교·윤후덕·김현권·소병훈·전해철·이철희·권미혁·박남춘·박광온·이용득·박홍근·송옥주·박정·임종성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김삼화·김관영·최도자·윤영일·오세정·조배숙·채이배·김광수·이정미·김경진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한정애·김경진·김영주·김종민·박재호·박정·박찬대·박홍근·서영교·신창현·안규백·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6건 1월 1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8. 김부겸·조정식·김현미·김정우·황주홍·윤후덕·인재근·김종훈·위성곤·이정미·민병두·서형수·김성수·소병훈·최도자·박선숙·전혜숙·권칠승·김동철·김해영·원혜영·이철희·김영춘·전재수 의원 발의)

12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문진국·장석춘·김종대·임이자·민경욱·김선동·김석기·김현아·정갑윤·성일종·이종명·장석호·엄용수 의원 발의)
12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이명수·권석창·김도읍·함진규·지상욱·이채익·이은권·박순자·임이자·유민봉 의원 발의)
2017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

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
됨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7. 1. 4. 이은권·윤상현·김성원·박덕흠·
김태흠·유기준·金成泰·이헌승·김도읍·
성일중·이명수·홍문표·함진규·박대출·
신상진 의원 발의)

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
발의)**

(2017. 1. 18. 김현아·홍문중·신보라·김성원·
조경태·권석창·주호영·김도읍·함진규·
문진국·정양석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이현재·이채익·이종배·이진복·
권석창·김진태·성일중·김성찬·정태욱·
배덕광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

○청원 회부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경쟁입찰) 금지 및 그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입법 및 개선에 관한 청원**

(2016. 12. 29. 한전산업개발 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최성균 외 2,122인으로부터 이정미·성일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29일 회부됨